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292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선(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2. 11.경 온라인 사이트 C 및 D 오픈 마켓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E
(여, 31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제작한 저작물인 'F'라는 핀테크
튼 슬랙스 착용사진을 피고인의 상호명이 작성된 판매게시물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전시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저작권자 증빙자료, 사진저작물 최초 공표일, 고소인의 등록된 상품 페이지, 고소인의 등록된 상품 페이지, 저작권 등록 신청서 및 저작권 등록증, 저작권 등재된 고소인의 사진저작물, 원작과 도용페이지 비교, 도용 상품 판매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국 의류 도매사이트인 G에 게시된 판매글에 공소사실 기재의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인증 마크를 믿고 위 사진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의 인터넷 주소를 게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해당 상품의 사진과 상품 정보 등을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처럼 중국 의류 도매사이트인 G에 게시된 판매글에 이 사건 사진은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인증 마크가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래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추가적인 안내가 있고, 원본 사진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위 사이트의 인증 마크가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 인증 마크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 G로부터 사진 파일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위 도매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더망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서, 육안으로는 사진에 특정 상표의 표시가 있는 상품의 사진만을 걸러낼 수 있을 뿐, 널리 알려진 상표 표시가 없는 상품의 사진은 애초에 육안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주의했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진이 중국의 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여 이 사건 사진을 임의로 게시함에 있어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구매대



행영업 방식 자체에 타인의 저작권 등 침해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그 영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구매대행상품의 사진이 우리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 요구되며 이는 피고인의 책임영역에 속한다고 보인다.

판사 방혜미 _____